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석유시장의 경쟁성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도입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제공되고 있는 수입부과금 환급(이하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인센티브') 적용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 도래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이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인센티브 일몰 연장(안 제2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인센티브 제공 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2. 11. 17. ~ 12.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단서 및 제7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① 법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① ---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	-----			
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			
말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	6. -----			
유제품을 법률 제11845호 자	-----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	-----			
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	-----			
(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	-----			
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			
다만, 2012년 7월 1일부터 <u>202</u>	----- <u>2025</u>			
<u>2년 12월 31일</u> 까지 통관되는	<u>년 12월 31일</u> -----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경우만	-----			
해당한다.	-----			
7. 석유정제업자가 제조한 석유	7. -----			
제품을 2013년 7월 1일부터 <u>2</u>	----- <u>20</u>			
<u>022년 12월 31일</u> 까지 한국거	<u>25년 12월 31일</u> -----			
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 --
8. ~ 10. (생략)	8. ~ 10.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석유산업과	
연 락 처	(044) 203-5225